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영옥, 강석주, 김규남,
김영철, 김용호, 김태수,
남창진, 민병주, 박성연,
박춘선, 신동원, 심미경,
이원형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'1인 가구'의 경우, 아침 결식, 외식, 나트륨 및 당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, 최근 새로운 '영양취약계층'으로 대두되고 있음.
- 그런데 현행 조례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'영양취약계층 대상'에는 '자립준비청년'과 '1인 가구'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'영양 취약계층'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- 이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, '영양취약계층 대상'에 '자립준비청년'과 '1인가구' 등을 포함하고자 함. 그리고 이에 더해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'영양관리사업'에 보충식품 지원사업, 홍보사업 등을 추가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'영양관리사업'을 추진하고자 함.
- 이와 더불어, 영양관리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,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영양관리사업의 '영양취약계층 대상' 추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.

나.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의무 신설(안 제1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영양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”을 “이 조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가목 중 “제10조에 따른 영양·식생활 교육사업”을 “제10조에 따른 영양·식생활 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”을 “제11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제12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”를 “제12조에 따른 영양·식생활 실태조사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위원회”를 “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영양·식생활 교육)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·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임산부, 노인, 노숙인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1인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
2.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경로당,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

3.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
 4. 섭취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영양관리사업
 5.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,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 사업
 6. 시민의 영양·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
 7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)”를 “(영양·식생활 실태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영양·식생활 실태조사) 시장은 제11조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, 영양 및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종합·제출 등) ① 시장은 관할 자치구 구청장이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할 구청장이 보고하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·복지, 교육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</u> 서울특별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서울특별시의 영양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다음 각 목의 영양사업 추진계획</p> <p>가. <u>제10조에 따른 영양·식생활 교육사업</u></p> <p>나. <u>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</u></p> <p>다. <u>제12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</u></p> <p>라. <u>그 밖에 시장의 명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</u>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가. <u>제10조에 따른 영양·식생활 교육</u></p> <p>나. <u>제11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</u></p> <p>다. <u>제12조에 따른 영양·식생활 실태조사</u></p> <p><삭 제>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영양정책위원회(이하 '<u>위원회</u>')를 설치 운영한다.</p>	<p>제9조(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"<u>위원회</u>"라 한다)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3. (생략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0조(영양·식생활 교육사업) ①</u> <u>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·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10조(영양·식생활 교육) 시장은</u> <u>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·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1조(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영유아, 임산부, 아동, 노인,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</p> <p>2.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</p> <p>3.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</p> <p>4. 섭취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</p> <p>5. 영양 섭취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</p>	<p><u>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①</u>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임산부, 노인, 노숙인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1인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</p> <p>2.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경로당,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</p> <p>3.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</p> <p>4. 섭취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영양관리사업</p> <p>5.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,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</p> <p>6. 시민의 영양·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) ① 시장은 제11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</u> 2. <u>식생활 행태 조사</u> 3. <u>영양상태 조사</u> 4. <u>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</u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7. <u>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2조(영양·식생활 실태조사) <u>시장은 제11조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, 영양 및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종합·제출 등) ① 시장은 관할 자치구 구청장이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</p>

편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209 972 379 1010"><신 설></p>	<p data-bbox="855 235 1436 409">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55 436 1436 678">② 시장은 관할 구청장이 보고하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55 705 1436 947">③ 시장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20 974 1436 1014">제14조(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) ①</p> <p data-bbox="855 1041 1436 1216">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55 1243 1436 1485">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·복지, 교육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제1항제1호	×	청소년, 장애인, 1인가구가 사업대상으로 추가 되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) 문서 등을 확인결과 기추진사업 ¹⁾ 으로 판단됨
		△	자립준비청년 대상 영양관리사업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 문의결과 지원규모 및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계가 곤란함 ⇒ 다만, 서울시 기존 시행사업 준용 시 연평균 100,000천원 소요예상
2	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제1항제6호	×	영양·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 문의결과 기추진사업 ²⁾ 으로 판단됨
3	제12조(영양·식생활 실태조사)	×	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³⁾ 기사행
4	제13조(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종합·제출 등)	×	시행계획 종합에 수반되는 비용발생요인 없음
5	제14조(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)	×	협력체계 구축은 별도의 비용 ⁴⁾ 을 수반하지 않음

※ 동 개정안은 또한 조례 전반의 자구를 수정·삭제⁵⁾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1) [기추진사업] 영양취약계층 대상 영양관리사업

- (청소년 관련) 보건소, 유아기관, 청소년기관 등과 연계한 당류 저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, 교육청 연계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위한 「당 줄이기 실천 학교」 확대하고 있음
- (장애인 관련) 노인·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 확대 등
- (1인가구 관련) 1인가구 행복한 밥상, 건강한 밥상 운영 확대 등

※ 자료 : 제1차 서울특별시 시민영양정책 기본계획(식품정책과-20025, 2024. 7. 19.)

- 2) 관련부서 문의결과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비용에 홍보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
⇒ 2024년도 <건강증진사업관리> : **6,325,191천원**
- 3)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(서울연구원, 2024. 8.)
- 4) 협력체계 구축(업무협조)은 통상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5) 제1조(목적), 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제1항제4호라목, 제9조(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), 제10조(영양·식생활 교육) 등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동 개정안 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1항제1호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대상 영양관리사업 비용⁶⁾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) 문의결과 지원규모 및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소요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다만, 2023년 시행하였던 서울시 시민건강국 <청년의 식생활 자립을 위한 식생활 능력향상 지원사업⁷⁾>을 준용할 경우 연평균 100,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-
- 6)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청년이자 통상 1인가구인 경우가 많아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,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) 문의결과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 총100,000천원 예산편성하였기에 향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할 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
 - 7) 2023년도 <청년의 식생활 자립을 위한 식생활 능력향상 지원사업>
 - 사업대상 : 청년 약1,800명 (중위소득 150% 이하, 자립준비청년)
 - 추진내용 : 식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식재료 지원 등
 - 소요예산 : 총100,000천원
 - 사무관리비 : 50,000천원
 - 운영지원 (사업홍보, 식생활 평가·분석, 업무협약 등 15,000천원)
 - 교육지원 (시설방문교육, 교육자료 제작, 식재료(꾸러미)구성 등 35,000천원)
 - 민간경상보조사업 : 50,000천원 (공모기관 2개소, 각25,000천원)